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2호

2017. 3. 24(금)

조례

선

람

기관의 장

○남원시 조례 제1326호 자율 방법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3 5 16 19 21 27 30 37
훈령	
○남원시 훈령 제375호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51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07-32호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53
공고	
○남원시 공고 제2017-470호 개간사업대상지 선정사항 공고(안)	
○남원시 공고 제2017-474호 보상계획 열람공고(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59
○남원시 공고 제2017-488호 도로지정(변경) 공고	72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26 호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남원시장(이	제4조(지원범위) ①
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u>구입</u>
<u>2</u> .· <u>3</u> . (생 략)	<u>3</u> . • <u>4</u> .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27 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청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을 "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기준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남원시 지역 대학생"이란 제	3
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u>신청</u>	<u>이</u> 자
기준일 현재 부모가 2년 이상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기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u>다만, 부모가 사망한</u>	<u><단서 삭제></u>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	
로 2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28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서식,"을 "서식 또는 공문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을 "변경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제3항 중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을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

영리법인 · 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를 제26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 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 상 책임을 진다.
-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

-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기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 신청서(제18조 관련)

	주 소	
신 청 인	성명	전화번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생년월일
시 설 명		
		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1부.

[별지 제5호 서식]

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제23조 관련)

·시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제3조(사용허가) ①
<u>사용하고자 하는</u> 자는 별지 제1	<u> 사용하려는</u>
호 <u>서식,</u> 허가 내용을 <u>변경하고</u>	<u>서식 또는 공문을, 변경</u>
<u>자 하는 자는</u> 별지 제2호서식에	<u>하려는 자는</u>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자 하는</u>	② <u>사용하려는</u>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	
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신
	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u>사람</u>	③ <u>자는</u>
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 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 -
<u>청서를</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	
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 받아 -----있다.

시

② ~ ④ (생 략)

제1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 제17조(위탁관리) ① ------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운영을 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 단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 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 의 관리 ·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등기부 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

보

시

<u><신 설></u>

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 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 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 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 다.
-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신 설>

<신 설>

<신 설>

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 사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 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

 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보

<신 설>

3. 그 밖에 국가 오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片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29 호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사회복지관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남원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노송로 1255-9(노암동, 주공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 제3조(운영)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의무위반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 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남원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30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고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신축 및 재건축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 하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2천만원 이내로 함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 하	1-10000 - 1910 B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 상 (1개소 경로당별)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 정수기, 음향방송설비 안마의자(휴대용안마기, 안마매트 등), 실내운동기구(러닝머신, 실내용자전거, 운동보조기구 등)	- 금액 100만원 이상 (1개소 경로당별)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31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중 명)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1통 1통	300원 5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주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1통 1통 1통 1통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 실적 다. 수출 실적 라. 납품 실적 마. 건물 사용 바. 공장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아. 공장등록 증명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차. 시설보유 증명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사실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1건 1건 1통 1통		일제신고 제외함	년 이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 분배 농지	1통	3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나. 환지 예정지 분할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마. 체비지 분할 신청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통 1통	4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과세증명(일반, 영문)	1건	800원		

H	-1 Z	A All	111	
구 분	기준	요액	비	고
나. 공직후보자납부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	1 000 01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l통 1토	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l통 1토	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1통 1 팀	300원 1 000의		
다. 중사군증기술 광역 및 중사로입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마. 모장묘 시골 증정	1-8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0	000 년		
(1) 신 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1건	2,000원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2)허가신청	1건	5,000원		
(3)면허·허가연장 신청	1건	5,000원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3 _3=			
(1)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종류마다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종류마다	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1건	2,000원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_	,,,,,,,,,,,,,,,,,,,,,,,,,,,,,,,,,,,,,,,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용제대리점	1건	30,000원	
(2) 부생연료유 판매소	1건	20,000원	
(3) 주유소	1건	20,000원	
(4)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마. 석유판매업 신고			
(1)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2)항공유 판매업	1건	10,000원	
(3)특수판매소	- 1건	1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 –	
(1)주유소	1건	20,000원	
(2)판매소	- C 1건	10,000원	
	10	10,000 ਦ	
4. 건설관계			
가. 하천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하천점용허가 신청신규 및 계속	1건	점용료의 1/1,000	
다. 도선장 설치 허가	1건	1,000원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71	1,000 전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건	500원	
적당 5인 이하의 배	1/1	500된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건	900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41	900편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건	1 200 01	
	1신	1,300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17]	2 100 0	
	1건	2,100원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1-7]	F00 61	
마.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1건	500원	
바.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1건	500원	
사.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원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1건	1,000원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발급의
	1-1		경우 1,500원
차.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카.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원	
거. 도로부지(지하도, 상가. 기타)점용허가 신청	1건	점용료의1/1,000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1건	20,000원	
장소 이전 신고	_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1건	100,000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_	, –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1건	40,000원	
개설 장소 이전 신고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1건	40,000원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파.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은
		(10,000)	읍·면지역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원	
		(2,300)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1건	5,000원	
신고사항 변경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보

구 분	기준	요 액	刊	고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60,000원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50,000원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거. 출판사 신고	1건	10,000원		
너. 출판사 변경신고	1건	5,0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1건	800원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1건	800원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32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4. 법 제4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र्व । यस वाचाय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 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 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 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법 제4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나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33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 도가 아닌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 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4.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 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서 정한 특수구조 건 축물 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 정된 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
 -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 목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5.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 6.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 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
 -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3.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② 제1항에 의한 책임범위를 예시하면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김
 -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

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 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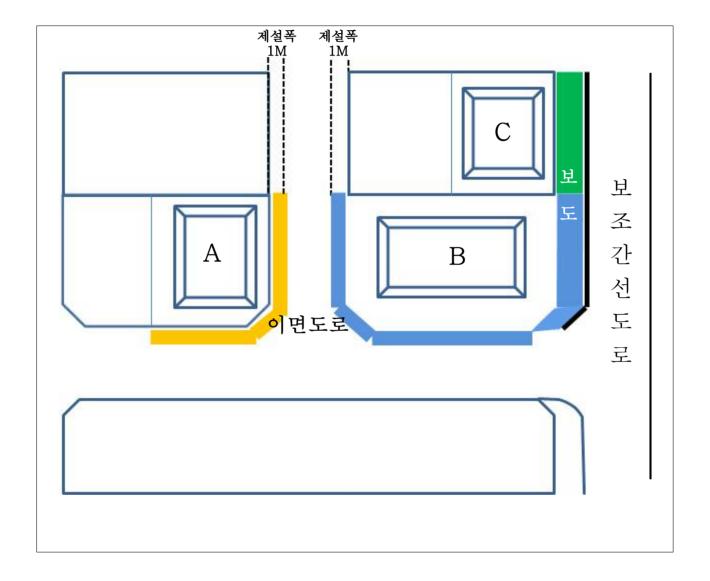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2호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4조 관련)

보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별표 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제2호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적설량(cm)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cm)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기본지상적 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 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비고
0.5 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 초과 1.0 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 초과 1.5 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 초과 2.0 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남원은
2.0 초과 2.5 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0.5
2.5 초과 3.0 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이하
3.0 초과 3.5 이하 지역	98.0	-	49.0	_	지역에
3.5 초과 4.0 이하 지역	112.0	-	56.0	_	해당함
4.0 초과 4.5 이하 지역	126.0	-	63.0	_	
4.5 초과 5.0 이하 지역	140.0	-	70.0	_	
5.0 초과 지역	140.0	-	70.0	_	
* 기사예비 가선랴이	∆~Rcmol	겨우 제선·제	비 기주 레	비가선랴 의 (/	1+B)/2근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 퍼센트 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제12호

 \langle 그림 0304.2.2 \rangle 기본지상적설하중 S_q

보



-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군 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조례 제 1334 호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워시 출산장려 지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장려금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시

- 2. "가정"이란 신생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 3. "출산장려금" 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양육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지원금을 말한다.
- 4. "지원대상자" 란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지원

-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 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 ②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생등록 시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가정이 된다.
 -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미혼,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 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④ 산후조리지원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의 산모(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시

-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신생아가 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
 - 2. 지원 대상 가정의 입양아와 사망자녀도 자녀수에 산입
 - 3. 재혼가정의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
-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 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 ② 출생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 상자일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거주자가 출산장려금의 50퍼센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 한 후 그 대상자에게 추가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추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 2. 시에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시

-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 ⑤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등재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가. 읍・면・동별 출산장려금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

제3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 제9조(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 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9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비용의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등의 지원신청은 제6조제2항의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신청서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산모·신생아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출산 축하

용품과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시

제4장 보칙

제12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 출산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출산 관련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 로 안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제5조 관련)

1. 출산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원)	비고
첫째아	500,000	
둘째아	1,000,000	
셋째아	3,000,000	
넷째아 이상	4,000,000	

2. 산후조리지원금

구 분	지 원 금 (원)	비고
셋째아 이상	500,000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장려금 (추가) 신청서(제6조제3항 관련)

시

구	분	□출산지원 ⁻	금 최초	신청일	:			
	부		생년월일	1		전입일시	년	월(일)
보호자			78 선 펄 딑	<u>i</u>		시 거주기간		월(일)
工工八	모		생년월일	1		전입일시 시		월(일)
	<u> </u>		0 1 2 2			기 기주기간 기주기간	. 년	월(일)
	성 명		성 별		생년	월일	•	
신생아	· ·	□첫째아, □	□둘째아,	□셋	째아 🗆]넷째아 여	이상(째아)
	분만의료 기 관				분만일	자	년 월	일
	전라북도	<u>. </u> 남원시	로 번 <i>7</i>	र्। (읍·면·	동 i	믜 번
주 소	지)				_			
				아괴	た	동 	<u>\$</u>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입금계좌 번 호	은행명	계조	\				예금주	
하여 담당보호법」이 기부할 권접 제출하다.	공무원이 기 따라 개역리가 있습니다 하나 합니다 출산장려 시 출산장	지원에 관한 건 지원에 관한 건 지원에 관한 건 기원에 관한 점임을 증명	기간, 출/ 는 것에 동의하지 조례」 7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산) 조례	생순위를 동의합니 않을 경 세6조에 보주계 보당자 당당자	를 확인하 나다. ※ 나우 신청 ⁽⁾ 나함 따라 출 : : 조제3항 ⁽⁾	는 것에 등 민감정보 인이 확인 ³ 출산장려금	등의하며, 처리에 다 과 관련된 과 공의하 을 (추가) 일 각 호의 명	「개인정보 배한 동의를 서류를 직 지 않음) 신청합니
 남워시	장 귀히	-						
	0 119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대장(제8조 관련)

번호		부(3	٤)			모(f	卦)			출 생 아		출생	비고
년 오 	o 당	생년 월일	주소	거주 기간	o 요	생년 월일	주소	거주 기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출생 순위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제8조 관련)

(단위 : 원)

													\	위 : 원)
		출 생	아		부모	성명	거주	기간		지	급 내 역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주소	부	모	부	모	예금주	은행명	지 급계좌번호	지원액	전화 번호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보

산모이름			생기	년월일							
- ·	전라북도	남원시	로	번지	(습. [면・등	<u>5</u>	리
주 소	번지)			(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	자 택				<u>- 기</u> 핸드 번	폰					
신 생 아	출생일				출산순	<u> </u> 은위	□단 □삼 이상	태아 태아		•	
서비스 제공기관명			서비. 이용기		년 <u>!</u>)	월	일 /	~	년	월	일(
본인부담한 총 금액		1		ı							
입금계좌 번 호	은행명		계좌번	<u> </u> 호				예금	급주		
	<행정	정보 공동이	용 및 :	개인정	!보 수	- 집 ·	이용 등	동의>			
여 담당공무 호법」에 따i	원이 거주 라 개인정! 있습니다.	현하여 「전자정권기간, 거주사실 기간, 거주사실 보를 수집하는 건 . 그러나 동의한	l, 출생 것에 동 하지 않	순위를 의합니!	확인 다. ※ 우 신청	하는 민김	것에 동 ·정보 ㅊ 확인	-의하ㅁ H리에	f, 「 대한 런된	개인 ⁷ 동의 서류	정보보 를 거
위와 같	이 산후건	l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을 신	청합니	니다.				
						년	왿]	일		
		<u>ک</u> ن	<u></u> 모와의	리관계	:						
LLOLLIT	. 71 <i>-</i> 1		신청약	인성명	:			(서	명 5	돈는 '	날인)
남원시 징	「쉬하										
첨부서류	1. 서비스	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	로인부딛	남금 지급	급 영수	·증 원본	1부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시

직인

2017년 3월 일

남원시 조례 제 1335 호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④ 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정담당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업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 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 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시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④ 연구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④ 연구 처리한다.

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 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안

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 단체의 등록 사무는 의정담당이 무는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맡아 처리하고 활동지원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 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 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보

남 원 시 장

직인

2017년 3월 24일

남원시 훈령 제 375 호

제12호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정담당주사"를 "5급 전문위원 중 선임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정대리)① (생 략)	제3조(법정대리)①(현행과 같음)
① 의회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①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	
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	
행 할 수 없을 때에는 <u>의정담당</u>	<u>5</u> 급
<u>주사</u> 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전문위원 중 선임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고시 제2017 - 32호

시

남원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에 의거 기 해제된 『남원 개발촉진지 구』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5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3. 24.

남 원 시 장

1. 남원 개발촉진지구 해제지역

가. 남원 개발촉진지구 해제 지형도면고시 내역

지역・지구명	위	え	면적(㎢)	비고
남원 개발촉진지구		시 일원 1동, 26리)	73.19	

나. 남원 개발촉진지구 해제 세부 내역

구 분	면적 (km²)	내역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해제 여부
합계	73.19			
1권역	7.29	혼불 문학배경지 연결도로	'11.7.19. ~ '14.12.31.	사업 완료
0 그) 6년	25.20	관광지(북남원I.C) 연결도로	'11.12.30. ~ '16.12.31.	
2권역	35.38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	'14.7.15. ~ '15.12.31.	"
3권역	1.97	스위트 에코센터(스위트호텔)	'10.3.12. ~ '11.12.31.	"
4 -71 6-1	00.55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11.6.29. ~ '14.12.31.	
4권역	28.55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11.7.28. ~ '14.12.31.	"

다. 남원 개발촉진지구 해제지역 지형도면(도면 축적 1/5000) : 게재 생략

보

2. 해제사유 : 남원 개발촉진지구 사업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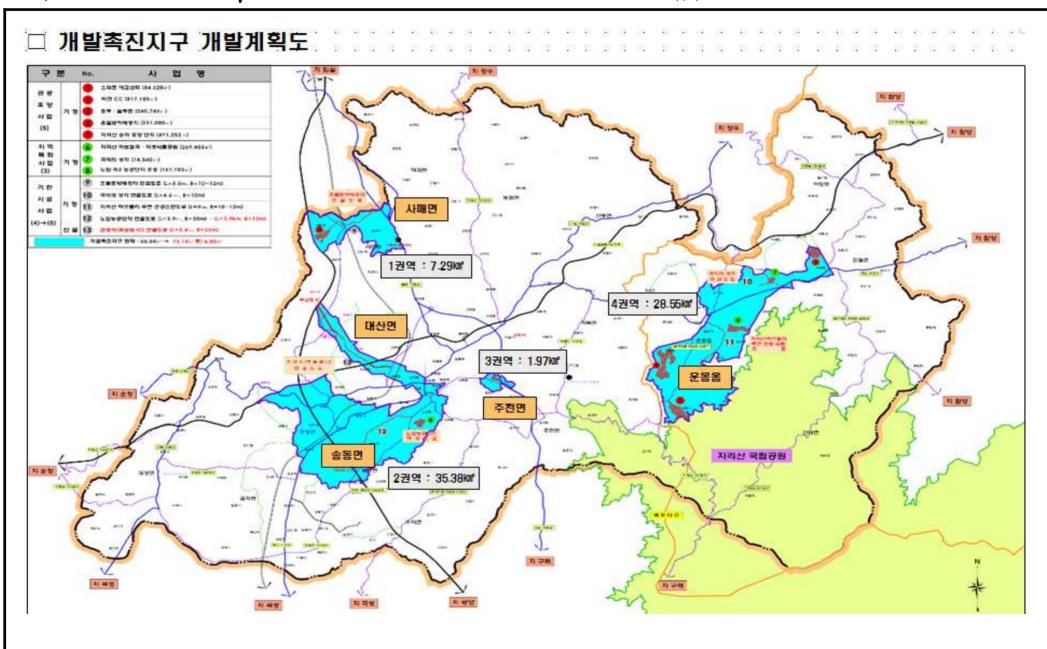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만료일 경과)

3. 해제일시 :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만료일 다음날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7. 3. 24.

5.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72)

붙임 남원 개발촉진지구 위치 및 지정 면적 1부.



남원시 공고 제2017 - 470호

시

공 고(안)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5조 및 개간업무추진에관한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 시 2013-294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대상지 선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03.24.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개 간
- 2. 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

(/	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²)	면 적 (m²)	
곽**	전남 곡성군 석곡면 *** ***-***	남원	대강	사석	산176	임야	33,223	4,990	

- 3. 목 적:개 전
- 4. 사업예정기간 : 2017. 05. . ~ 2018. 05. 30.
- 5. 열 람 장소: 남원시청 농정과(농업시설) (☎ 063-620-6390)

남원시 공고 제2017 - 468호

시

소규모 위험시설(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위험시설(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4.

남 원 시 장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명 칭 : 소규모 위험시설(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683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원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남원시청)

3. 사업시행 규모, 사업비 및 효과

○ 사업규모 : 세천 정비 L=261m

○ 사업비: 352,649천원

○ 효 과 : 세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비치 및 열람 가능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토지조서

		소재지]			편입		소유자		해 관계]인	
연번	시	뇽	지번	지목	지적 (m²)	면적 (m ⁱ)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1	남원	어현동	681	임	284	48	김승*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	남원	어현동	682	전	99	22	김승*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3	남원	어현동	산137-2	임	8,130	29	안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 지장물조서

○ 별첨

남원시 공고 제2017-474호

시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보상계획 면 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노암 산업단지	남원시 송동면	도로 확·포장	FO 11 1 /	2016 2019	
연결도로	장국리 일원	L=0.7km,	50필지 /	2016~2018	남원시장
개설사업	(도시계획구간)	b=15m	6,979m²	(3년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열람(의견서 제출) 기간 : 2017. 3. 24. ~ 2017. 4. 7. (14일간)

나. 열람(의견서 제출)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73)

다. 열람내용 :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소유자 개별 통보)

※ 열람기간 경과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3.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가. 보상시기 : 2017. 5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추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서 통지 → 보상협의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4. 기타사항(감정평가업자 추천 포함)
 - 가.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며, 주소·거소 불명 또는 수취인의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시기에 맞춰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 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마.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 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보

□ 감정평가업자 추천 양식

시

감정평가업체명	주	소	성 명 (나이)	자격증번호	경력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미고

□ 토지 소유자 동의 현황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 위	구 자	나이	전화번호	비고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m²)	주소	성명	날인	(자택 및 휴대폰)	

※ 제출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 인 서명은 불가함.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편입토지조서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해 저	지	번		면적	(m²)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행정 구역	분할 전	분할	지목	공부 면적	편 면 면	지분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의 내용	비고
1			203-5	다			1177 /19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강*식				
1	송동면	203-1	203-3	답	6.246	174.0	755 /1932	전주시 덕진구 백동5길***	김*원				
2	송동면 장국리	203-1	202.6	-L	6,246		1177 /1932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강*식				
2			203-6	답		257.0	755 /1932	전주시 덕진구 백동5길***	김*원				
3	송동면 장국리	203-2	203-2	도			1177 /1932	남원시 송동면 동서내1길 ***	강*개				
3	장국리	203-2	203-2	ᅩ	132.0	132.0	755 /1932	전주시 덕진구 백동5길***	김*원				
4	송동면 장국리	204	204-3	답	1,729 .0	171.0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박*				
5	송동면 장국리	204-1	204-4	답	1,158 .0	14.0		남원시 충열길***	강*원				
6	송동면 장국리	205	205-2	답	2,887	122.0		남원시 충열길***	강*원				
7	송동면 장국리	206	206-1	답	1,706 .0	142.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허*식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	허*권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8	송동면 장국리	207	207-1	답	2,962	19.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강*수				

2017. 3. 24(금)

1	ı	ı	I	I	1 0	I	1	I	I		1	I	
					.0								
9	송동면 장국리	232	232-1	잡	9,959	1,01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한***사				
10	송동면 장국리	233-3	233-3	도	47.0	47.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김*조				
11	송동면 장국리	234	234-2	답	2,770	362.0		남원시 송동면 동서내1길***	김*근				
12	송동면 장국리	234-1	234-3	도	123.0	58.0		남원시 송동면 동서내1길 ***	김*근				
13	송동면 장국리	235	235	구	53.0	53.0			곽*렬				미 등기
14	송동면 장국리	238-1	238-1	전	758.0	758.0		남원시 향단로***	김*현				
15	송동면 장국리	238-2	238-5	도	93.0	89.0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허*이				미 등기
16	송동면 장국리	238-3	238-3	도	7.0	7.0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	허*이				미 등기
17	송동면 장국리	242	242-8	답	2,058	339.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강*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농*** ***사	근 저당권	
18	송동면 장국리	242-7	242-9	답	321.0	246.0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강*임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농*** ***사	근 저당권	
19	송동면 장국리	273-2	273-1 0	전	190.0	1.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윤*말순				
20	송동면 장국리	274-5	274-9	답	85.0	11.0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박*자				

2017. 3. 24(금)

21	송동면 장국리	275-2	275-2	도	30.0	30.0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윤*순				
22	송동면 장국리	275	275-3	전	1,321	324.0	남원시 노송로***	김*만				
23	송동면 장국리	280-1	280-5	전	199.0	38.0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강*기				
24	송동면 장국리	280-3	280-6	도	22.0	19.0	남원시 송동면 노송로**	강*원				
25	송동면 장국리	281-1	281-1	전	374.0	374.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허*애				
26	송동면 장국리	282-1	282-4	전	1,023	290.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형*이				
27	송동면 장국리	284	284-2	전	2,163	1.0	남원시 시묘길 ***	주****	남원시 붕맛길 ***	<u>온</u> *** ****	근젔당	
28	창국리	204	284-3	신	.0	70.0	금권시 시표결 ***** 	* <u>#</u>	급현시 중맛설 *****	****	근저당 권, 지상권	
29	송동면 장국리	284-1	284-4	도		1.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윤*순				
30	장국리	204-1	284-5	工	108.0	35.0	태동길***	世正				
31	송동면 장국리	293-2	293-1 7	임	6,713	81.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진**** ***중				
32	송동면 장국리	293-4	293-1 8	임	4,255	41.0	남원시 금하정2길 ***	남*화				
33	송동면 장국리	293-6	293-6	임	20.0	20.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진**** ***중				

34	송동면 장국리	298	298-2	대	806.0	3.0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강*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 **행 (전주 지점)	근저당 권
							3/8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	김*수			
35	송동면 장국리	302	302-1	답	7,131	165.0	1/8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허*식	서울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허*권	소유권 이전청 구권가 등기
							1/2	남원시 동문로 ***	김*순			
26	송동면	470.7	470.7				1/2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허*규			
36	송동면 장국리	478-7	478-7	답	218.0	218.0	1/2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박*임			
37	송동면 장국리	483-1	483-5	전	940.0	149.0		남원시 송동면 장국길***	곽*곤			
38	송동면 장국리	483-4	483-6	전	351.0	81.0		남원시 송동면 장국길***	곽*곤			
39	송동면 장국리	484-1	484-5	공장 용지	385.0	2.0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강*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주*** **** 행 (전주 지점)	근저당 권
40	송동면 장국리	484-4	484-6	공장 용지	1,098	181.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윤*곤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춘*** **합	근저당 권
41	송동면	406	486-3	FL	1 117	3.0		남워시 송동면	0+7	ILOUI 그린데 그린스킨 기사	추***	근저당
42	송동면 장국리	486	486-4	답	1,117	368.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윤*곤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춘*** **합	근저당 권, 지상권
43	송동면 장국리	487	487-4	답	2,003	14.0		남원시 송동면 태동길***	윤*곤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춘*** **합	근저당 권

44	송동면 장국리	488-1	488-5	답	84.0	15.0		남원시 노송로***	김*수			
45	송동면 장국리	489-1	489-5	답	2,876	96.0		남원시 노송로 ***	김*수			
46	송동면 장국리	490-5	490-9	답	2,634	165.0		남원시 송동면 척동앞길 ***	오*례			
47			산8-9			144.0						
48	송동면 장국리	산8-3	산8-1 0	임	3,516	24.0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	김**** ***회	남원 시	압류	
49			산8-1 1			11.0						
							1/3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양*식			
50	송동면 장국리	산8-4	산8-1 2	임	36.0	4.0	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장*자			
							1/2	남원시 요천로***	양*녕			
합계			60			6,979						

편입물건조서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물건소유자			관계	인	
연번	행정구역	소재지지번	물건명	상황및 구조	편입 수량	단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비고
1	송동면 장국리	205	관정	농업용, 전기설비	1	식	남원시 충열길***	강*원				
2	송동면 장국리	232	소나무	H=2.0m	1	주	대구광역시 동구 ***	한***사				
			조경석	H=2m	12	m						
			옹벽블럭	H=0.3~1m	15	m						
			철쭉	H=0.3m	45	주						
3	송동면 장국리	238-1	마늘		30	m²						
4	송동면 장국리	234	호두나무	H=4m	2	주						
			매실나무	H=1m	3	주						
5	송동면 장국리	274	측백나무	w=0.7~1m, H=1.5~2m	55	주	남원시 송동면 ***	박*자				
			사철나무	w=0.5~1m, H=1.5m	8	주						
			동백나무	w=8cm, H=2m	1	주						
			소나무	H=5m	3	주						
			싸리나무	H=3m	1	주						

2017. 3. 24(금)

제12호

			마늘		13.5	m²				
8	송동면 장국리	277-2	매실나무	H=2m	2	주				
			살구나무	H=2m	2	주				
9	송동면 장국리	293-2	관목	H=4m	1	주				
10	송동면 장국리	293-2	분묘		1	기		허*현		
11	송동면 장국리	293-2	분묘		1	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허*무		
			상석		1	식				
12	송동면 장국리	293-15	측백나무		27	주		강*현		
			소나무		30	주				
			포도나무		20	주				
			관목		35	주				
			교목		10	주				
			소나무	H=9m	1	주				
			벚나무		63	주				
			입간판	4m*1.5m	1	식				
	송동면 장국리	484-1	소나무	H=12m, R=35	1	주				

· 2017. 3. 24(音)

ı		1	<u> </u>	l			1	1	I	I	ı
			소나무	H=8m, R=20	1	주					
			소나무		14	주					
			측백나무		5	주					
			벽돌		9	묶음					
			동백나무		2	주					
			철쭉		10	m²					
			벚나무		2	주					
			입간판	1m*1m	1	식					
	송동면 장국리	484-4	벽돌		150	묶음					
13	송동면 장국리	294-1	감나무		9	주					
			대추나무		2	주					
			살구나무		1	주					
			탱자나무		30	주					
14	송동면 장국리	478-1	벚나무		1	주					
15	송동면 장국리	490-5	교목		2	주					
합계		15건									

제12호

의 견 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남원시
사업의종류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의 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인)

주 소:

연락처 :

전라북도 남원시장 귀하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 남원시 공고 제 2017 - 488호

시

도 로 지 정(변경)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4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당초) 공고내역

지정	대	지	건축주	허가(협의) 및	도로	도로	도로	C	이해관계	인
번호	위	え	성명	신고번호	길이 (m)	너비 (m)	면적 (m²)	지 번	편입면적 (m²)	토지소유자
2016-2	남원시	조산동	김*홍	2016-건축과-	66.8	6	401	남원시	401	김* 홍
8	25-1,	25-19		신축신고-454				조산동		정*문
								25-1,		오*리
								25-19,		리*훈
								25-20,		
								25-22		

○ 도로지정(변경)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²)	토지소유자
2016-2	남원시	조산동	김* 홍	2017-건축과-	70.8	4.35	308	남원시	308	김* 홍
8	25-27,	25-32		신축허가-28				조산동		정*문
								25-1,		오*리
								25-19,		리*훈
								25-40,		
								25-41		